

『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1월 26일

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유 익 수

나. 제안이유

- 휴양림 관련 사이트가 산림청 통합 사이트(숲나들e)로 운영됨에 따라 산림청 기본정책과 통일되는 기준을 마련,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-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관련 조문 정비 등 산림복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숲나들e 정책 기준에 따라 성수기 기간을 변경(안 제3조제3호)
(당초) 7월~8월 → (변경) 7월 15일 ~ 8월 24일
- 배상처리 기한 단축(안제8조제2항)
(당초) 5일이내 → (변경) 3일 이내
-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 관련 조문 정비
(안 제6조제3항제5호~제10호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강 창 조

- 본 「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휴양림 관련 사이트가 산림청 사이트(숲나들e)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성수기 기간 및 환불에 따른 배상처리 기한 단축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,
 -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예약기회를 부여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, 국가보훈 대상자의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